

이용료, 그 밖에 이용자의 부담 등

1. 서비스 내용

- 1)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복약도움 등의 신체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지원, 말벗 및 위로 등의 정서지원, 취사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지원, 외출 병원이용 등의 개인 활동지원을 이용자의 신체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다.
- 2) 방문요양급여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(방문요양급여제공기준)에 따른다.

2. 서비스 이용료(방문요양 급여비용)

- 1) 이용료(방문요양 서비스 급여비용)는 아래의 표와 같다.

분류번호	서비스 제공 시간		수가 (원)
가-1	방문요양 1회 방문당 30분 이상		17,450
가-2	방문요양 1회 방문당 60분(1시간) 이상		25,320
가-3	방문요양 1회 방문당 90분(1시간 30분) 이상		34,120
가-4	방문요양 1회 방문당 120분(2시간) 이상		43,430
가-5	방문요양 1회 방문당 150분(2시간 30분) 이상		50,640
가-6	방문요양 1회 방문당 180분(3시간) 이상		57,020
가-7	방문요양 1회 방문당 210분(3시간 30분) 이상		63,530
가-8	방문요양 1회 방문당 240분(4시간) 이상		70,080
휴일가산	일요일 30%가산	심야가산	22시 이후 06시 이전: 30%가산
	공휴일 50%가산		

- 2)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며, 수가 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- 3)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.
- 4) 월 이용료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,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. 월 이용료에서 본인부담금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.
- 5)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제공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기관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였을 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

6)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(대면, 전화, 메시지 발송 등)을 통해 미납금 납부(입금)를 독려(독촉)할 수 있다.

7)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② 월 한도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.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
③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도, 가스, 전기, 전화요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 한다.

④ 병원동행, 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한다.

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시행규칙,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등 방문요양급여제공 서비스 이외에 기타 이용자가 요청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효경재가복지센터